

행 정 자 치 부

훈 계 요 구

제 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안산시, 오산시

관 련 자 ① 안산시 ○○○

지방○○○○ ○○○

② 안산시 ○○○

지방○○○○ ○○○

③ 오산시 ○○○○○

지방○○○○ ○○○

④ 오산시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3. 1. 1.부터 2016. 2. 15.까지, 지방○○○○ ○○○은 2014.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1. 12. 23.부터 2015. 6. 21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한 실무팀장, 실무자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안산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8항에 따르면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산시에서는 조직개편 및 휴직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임기제 공무원(○○○○○○-○○○○○○ 담당자, ○급) 채용을 추진하면서

2015. 2. 25.(○○○-○○○○) 시장 결재를 득하여 2015. 2. 24. 안산시인사위원회 안전심사 후 2015. 2. 26. 자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안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호)하였다

※ 세부자격요건(○○만원) : 우대조건

-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발급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워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그 결과 ○○○ 등 57명이 응시하여 2015. 3. 18. 면접시험을 거쳐 ○○○ 등 10명을 최종 합격자로 2015. 3. 19. 결정(안산시인사위-○○)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평가해 보면 ○○○, ○○○, ○○○, ○○○, ○○○, ○○○, ○○○ 등 7명은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들임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차순위자들을 합격자로 처리하여야 했다.

2. 오산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오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조건은 별표5의3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산시에서는 ○○○○ 단속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규정과 2014. 12. 23.(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201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자격요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금연지도점검, 금연단속, 주정차위반단속, 보건의료위생자도단속 등의 경력

(필수자격) 운전면허증(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기 타)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수시 야간단속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그 결과 ○○○ 등 6명이 응시하여 2015. 1. 13. 1차 서류전형(오산시인사위원회-○)을 거쳐 2015. 1. 16. 2차 면접시험 후 ○○○를 2015. 1. 19.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2015. 1. 20. 공고(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2015-○호)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평가해 보면 ○○○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는 부적격자이며 나머지 응시자들 또한 ○○○○ 단속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서 재공고 과정을 거쳐 관련 업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산시장, 오산시장은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준수하시고 과도한 자격기준 설정으로 다수인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